

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67호 |
| 의결 년월일 | 2006.12.21 (제132회) |

제안년월일 : 2006년 11 월 17 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(2006. 10. 17, 대통령령 제19702호)에 따라, 부천시의회 의원의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현지교통비(1일당)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함. (안 별표 2)

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현지교통비(1일당)란중 “10,000”을 “20,000”으로 하고, 동표의 비고란 1.중 “출석”을 각각 “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